

#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



국제대학교

#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

**제1조(적용 및 효력)**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칭한다)에서 행하는 제반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조건인 일부가 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교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.

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교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③ 현장 감독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임명한 직원 및 시설공사 담당 부서 직원을 말한다.

④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임명한 기술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.

⑤ 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도, 시방서, 도면 및 내역서를 포괄 의미한다.

**제3조(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)** ① 낙찰자는 낙찰 통고를 받은 후 일 7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차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의 처리)**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.

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.

**제5조(계약체결)** ① 낙찰자는 소정 양식의 내역서를 낙찰통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내역서를 입찰조건에 부합되도록 본교에서 조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계약체결에 필요로 하는 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고 당해 공사에 해당 하는 면허를 얻은 자 1인 이상이어야 하며, 이 공사계약을 보증한 보증인들은 계약이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(연대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계약이행증권의 보증금율을 15%로 한다.)

④ 계약체결 이후에 본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 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계약문서)**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, 설계도면, 시설공사시방서, 계약입찰유의서,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,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,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으로 구분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.

② 설계서 내에 불분명, 누락, 오류, 불일치 등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③ 본교는 공사의 유효 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상대자 에 게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.

④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 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공사의 착수)**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
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공사현장 변경상태)**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 기 전에 즉시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.

1.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
2. 기타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

②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과 계약기간을 가감,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. 단,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9조(공사재료의 검사)**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공업표준화 규격품(KS, 외국기관 공인 제품)으로서 신품 이어야 하며 품질, 품명, 규격등은 반드시 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한다. 단,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공업표준화 규격품으로서 계약목적에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.

②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하였을 경우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때 에는 본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물품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.

④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.

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현장감 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할 수 없다.

⑥ 계약상대자가 전 각 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 또는 설계도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.

**제10조(지급재료 및 대여품 기타)** ①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료와 대여 기구 기계는 일시 지정한 장소 에서 필요한 조건과 함께 이를 인도한다. 단, 인도시와 인도 후 운반비, 수선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.

② 지급된 재료 및 대여품은 관계 부서의 승낙없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비치된 장소에 출입을 검사할 수 있다.

③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은 계약목적의 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 야 한다.

④ 시설공사시에 학교가 타에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전기 및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을 사용 하였을 경우 에는 해당의 소정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공사 현장대리인)**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현장감독원)** ①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.

② 전항의 감독원의 활동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그의 고용인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③ 현장감독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,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부가지불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.

**제13조(설계서의 변경)** 본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제기할 수 있다.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,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쌍방 협의 하에 정한다.

**제14조(긴급보수)** 공사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 중 긴급히 보수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나 그의 보증인이 즉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학교 당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관련 공사를 제3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5조(기한연장과 지체상환금)** ① 소정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변, 전염병, 교통 운반로 차단, 기타 불가항력의 요인이나 학교 당국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상환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지체상환금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불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 단, 제20조 1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수하였을 때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한다.

**제16조(공사의 준공)**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 자재,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방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전체를 정돈하여야 한다. 단, 지급 자재의 잉여분은 지시에 따라 본교에 반환한다.

②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이의 인도를 요구한 때도 이에 준한다.

③ 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즉시 보수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에 공사 기간이 연장될 시는 제15조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공사의 완전 인도 전에 발생한 공목적물 또는 제3조에 대한 손실은 별도 규정 이외 것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.

**제17조(하자보수보증금)** ①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1항(별표1)에 의한다.

②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,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(보증보험회사, 건설공제조합, 전기공사공제조합 등)으로 공사금 완불 전에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성질상 하자보수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하자보수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한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.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

받은 때에는 그 증권 또는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이를 현금으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하자기간 후라도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 변상을 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특허권등 사용)** 공사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.

**제19조(발굴물의 처리)** 공사장에서 발견한 가치 있는 일체의 물건은 파손이 없도록 하여 즉시 본교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**제20조(대금지불)** ①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 한다. 기성부분의 지불은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.  
② 검사 후 지불이 완료된 기성부분의 소유권은 본교에 있다. 단, 지불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유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.

**제21조(하도급의 금지)**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시킬 수 없으며 본교의 승인을 얻어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이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. 단, 일단 승인한 하도급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22조(기성공작물 및 타의 설비)** ① 공작물 인수 전에도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 공사를 할 수 있다. 계약상대자, 부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.  
② 전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교의 개입하에 부가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종업원 및 고용원)**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기술분야의 종업원, 기타 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.  
② 계약상대자는 그의 대리인, 종업원, 고용원들이 본교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불미스러운 행동에 책임을 지어야 하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 
③ 계약상대자는 일체 종업원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하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계약 불이행)**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1. 착공 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
2. 준공기일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
3.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진보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
4. 계약상대자 또는 그 보증인, 대리인, 기타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감독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방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
5.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

**제25조(계약 해지 또는 해제)**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해지 또는 해제의 사실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.

1.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소(3분의 1내지 5분의 2)되었거나 공사 정지기간이 공사 진행에 적당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여 계약상대자가 해제를 청구한 때

**제26조(비상사태 조항)** 계약체결 후 전쟁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분규기타)**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분규는 쌍방 합의로서 해결한다.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본교의 지시에 따른다.

② 계약이행 중절 후라도 해당 공사에서 당장 발견하기 곤란한 기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손해를 당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및 추정할 수 있다.

**제28조(권리의무의 양도 등)** ①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 승계 또는 담보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.

② 공사 목적물 또는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재료는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.

**제29조(어구의 해석)** 본 규정 및 계약조건, 기타 계약서상의 내용에 관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 측의 해석이 우선한다.

#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



**국제대학교**

# 공사계약특수조건

**제1조(목적)** 이 공사계약특수조건(이하 “특수조건”이라 한다)은 국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계약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 반조건(이하 “일반조건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공사의 착공, 감독, 하도급관리, 대가의 지급, 검사, 재해방지조치, 인수, 하자 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총장(그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계약담당자로 본다.

**제3조(권리의무의 양도등)** ①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·승계 또는 담보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.

② 공사 목적물 또는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재료는 제3자에 양도·대여 또는 담보 목적에 제공할 수 없다.

**제4조(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)**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제출)**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시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에 필요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및 건설근로지증지첩부관리 대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)**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대가의 지급등)** ① 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(재정경제부 회계예규)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.

② 선금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반드시 공사 현장대리인의 임금지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기성부분의 지불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불구하고 전면책임관리를 실시할 경우, 감리단의 기성검사를 필한 기성검사조서에 의하여 지불한다.

**제8조(선금금)** ① 선금금은 계약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.

② 선금급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을 정산한다

$$* \text{선금급 정산액} = \text{선금금액} \times \frac{\text{기성부분 대가 상당액}}{\text{계약 금액}}$$

③ 본 공사의 선금급은 계약금( )원의 ( )%인 ( )원으로 한다.

④ 선금급은 계약 시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9조(노임지급)**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. 다만,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0조(채권양도)**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,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1조(환경오염방지등)**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소음, 진동,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규제법, 폐기물관리법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, 처리방법,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,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, 학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2조(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)**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,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(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)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
2.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

④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,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.

**제13조(공사감독관의 지시)**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(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)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휴일 및 야간작업)**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본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승인없이 휴일, 공사불능기간중 작업,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승인을 얻어 휴일, 공사불능 기간중 작업,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
**제15조(부적절한 시공)** ①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상 적합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.

②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방법을 사전 승인 받았을 경우 또는 본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6조(시공확인)** ① 계약상대자가 일정 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공사감도자를 경유하여 시공완료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본교에 완공검사를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③ 전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또는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
**제17조(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)**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·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. 시공 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.

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·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를 변경·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.

**제18조(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)**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 현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

2.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

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,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.

**제19조(하자보수 책임승계 등)**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 자는 그 자신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20조(하자담보)** ①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21조(하자보수)**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 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(이하 “하자담보책임기간” 이라 한다)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(계약 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)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.

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(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)하여 설정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 규칙 제70조 관련 별 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 간을 조정하여야 한다.

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하자보수보증금)**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(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)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“하자보수보증 금” 이라 한다)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학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한다.

**제23조(공사관리)**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·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시공상태
2. 안전관리 상태
3.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
4. 공사현장 관리상태
5. 하도급에 관한 사항
6.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

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·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.

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 영할 수 있다.

**제24조(계약 변경)**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예정가격, 설계서, 내역서 중 정부가 발 행한 표준품셈, 물량, 단가 또는 노임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라도

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해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지불액 중에서 차감 지불 할 수 있다.

③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법령의 준수 등)**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, 조례,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)** ① 일반조건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·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계약상대자의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(이하 “부도 등” 이라 한다)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 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·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.

**제27조(계약상대자의 책임)**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목적물을 완성 인도한 이후에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. 제3자에 대한 것도 또한 같다.

**제28조(소송의 관할법원)**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국제대학교 대학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**제29조(보칙)** ①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.

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,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.

④ 계약상대자의 전화·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.